

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1호(주식)-변경사항

1.펀드명 :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1호(주식)

2.정정사유

1)규약

①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

2)투자설명서

①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

3.변경내용

<규약>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7. (기재생략)</p> <p>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("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"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.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.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<u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u></p> <p>1.~17.(현행과 동일)</p> <p>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<u>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 "수익증권고객계좌부"라 한다)</u>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. <u>수익증권</u>의 종류 및 수</p> <p>③ <삭제 ></p>

	<p>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("실질수익자"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,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p> <p>⑤(기재 생략)</p>	<p>④ <u>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⑤(현행과 동일)</p>
<p>제11조(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)</p>	<p>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,000좌권, 10,000좌권, 100,000좌권, 1,000,000좌권, 10,000,000좌권, 100,000,000좌권, 1,000,000,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③ <삭제></p>
<p>제12조(수익증권의 재교부)</p>	<p>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("현물보유수익자"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분실·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①~③ <삭제></p>

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	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 ③ (기재생략)	① <u>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과 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합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 ② <u>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.</u> ③ (현행과 동일)
제14조(수익자 명부)	①~④(기재생략)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실질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실질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 ⑧(기재생략)	①~④(현행과 동일)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<u>수익자</u>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<u>수익자</u> 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<u>수익자</u>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<u>수익자명부</u> 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</u> 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<u><삭제></u> ⑧(현행과 동일)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5.(기재생략) 6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<u>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

	<p>등"이라 한다)</p> <p>7.~10.(기재생략)</p> <p>②(기재생략)</p>	<p>1.~5.(현행과 동일)</p> <p>6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<u>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</p> <p>7.~10.(현행과 동일)</p> <p>②(현행과 동일)</p>
제24조(수익증권의 판매)	<p>①(기재생략)</p> <p>②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③(기재생략)</p>	<p>①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<u>고객</u>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③(현행과 동일)</p>
제26조(환매업무)	<p>①~③(기재생략)</p> <p>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⑥~⑧ (기재생략)</p> <p>⑨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③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<u><삭제></u></p> <p>⑤ <u><삭제></u></p> <p>⑥~⑧(현행과 동일)</p> <p>⑨ <u><삭제></u></p>
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	<p>①~③(기재생략)</p> <p>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③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<u><삭제></u></p>
제48조(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)	<p>①(기재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</p>	<p>①(현행과 동일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</p>

	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	1. <u>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</u>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
		부칙 <u>제1조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

<투자설명서>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	가. 투자대상 ⑤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)	가. 투자대상 ⑤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<u>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)

* 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사항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